

# 2022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직 채용공고

2022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발 예정 인원 및 지원 자격

직렬 (분야)	채용 인원	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	
전문직 (회계사)	1명	지원 자격 (필수조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응시연령) 만 18세 이상</li> <li>· (학력) 제한 없음</li> <li>·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
		우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(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) 및 장애인</li> <li>·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기업·회계/세무법인 등에서 세무 및 회계 업무 2년 이상 경력자</li> </ul>
		담당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, 종합재무제표 작성</li> <li>· 과세 연구과제 매입 부가가치세 정산·환급</li> <li>·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</li> <li>· 대학간접비 원가 산출 등</li> </ul>

※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 제10조(임용 결격사유)에 해당하거나,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## 2. 응시원서접수

○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2. 2. 4.(금)

○ 접수 방법: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, 인터넷으로만 접수

- URL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<http://snurnd.snu.ac.kr>) → 산학협력단 소개  
→ 채용 → 채용공고 → 전문직(회계사) 채용공고 → 지원서 작성

☞ 유의사항

- ① 우편, E-mail 접수 불가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
-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 취소
-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 구비·확인 요망

## 3. 선발 절차(서류전형 → 면접전형)

○ 서류전형: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

※ 평정 요소: 전문성, 자기 계발, 발전 가능성 및 소양,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, 논리성, 상대적 우수성 등

※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

○ **면접전형:** 질의면접(1대多 면접)

※ 평정 요소: 일반소양 및 가치관,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,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발전 가능성 등

**4. 채용 일정**

○ **채용공고:** 공고일 ~ 2022. 2. 4.(금)

○ **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 발표:** 2022. 2. 9.(수) 예정

○ **면접시험:** 2022. 2. 11.(금) 예정

○ **최종합격자 발표:** 2022. 2. 16.(수) 예정

○ **임용 예정일:** 2022. 3. 1.(화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(공지 사항-채용)에 별도 공지 예정

**5. 임용사항 등**

○ **계약기간:** 최초 근로계약은 2년(수습기간 면제)을 원칙으로 하고, 심사에 따라 3년 단위의 재계약 체결 가능(단, 단위 계약의 기간은 상향으로 조정 가능)

○ **보수:** 초임 연봉 5천만원 중반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조정(성과급 별도지급)

○ **복지:** 휴양시설 제공, 복지포인트 지원,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 진료비 지원 등

○ **임용 제외**

◆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 제10조【임용 결격사유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11.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

◆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【결격사유】 준용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

-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6. 기타사항

-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(채용)에 공지
-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,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,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·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
-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
-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(상근)할 수 있어야 함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(02-880-2076)로 문의

2022. 1.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